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6월 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0년 6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0. 6. 15)
상정 및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하수과장 배덕기)

□ 제안이유

- 통합고지 되고 있는 상수도과 하수도 요금 적용 시 소멸시효와 사용량 인정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수도요금과 형평에 맞게 정비·보완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 환경부 「하수도 표준조례」의 일부개정 시달(2009. 12. 30.)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현행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배수설비 개선공사를 강제시행 하는 것은 「하수도법」의 위임 범위를 침해하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공사시행 요건을 명확화함(제7조제1항제2호 삭제).

- 나.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의 사용량 인정 기준을 조정함(안 제11조제4항).
- 다. 가설건축물 원인자부담금의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을 신설함 (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라.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의 보완 및 개략사업비 산정기준을 추가 규정함 (안 제17조제2항, 별표 10).
- 마.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른 3년으로 하고, 사용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5년으로 함(안 제24조의2 신설).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문	답 변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 음
-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호 중 “않도록”을 “아니하도록”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15입방미터(m^3)”를 “15세제곱미터”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3개월분”을 “4개월분”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 m^3 /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하수처리 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처리구역외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하수처리 시설 신설·증설 등이 필요할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공공하수처리 시설 건설 총사업비: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등 총 소요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1. 하수발생량의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 연도에 해당하는 우리 시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일 최대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 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 연도의 중간일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하수량과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상의 하수량을 비교하여 많은 양을 하수발생량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을 산정할 경우에는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는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3.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총사업비 중 시설비는 별표 10 「개략사업비산정기준」을 적용하되 처리공법 및 지중화 등 여건변경 시 사업비를 추가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소멸시효)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른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른 5년으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0]

개략사업비 산정기준(제17조제2항제3호 관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신설·증설)]

○ 소요비용 산정식 : $C = 62.55 \times Q^{0.619} + \text{차집관거(중계펌프장 설치비 포함)}$

- ▶ C : 공사비(백만원)
- ▶ Q : 시설용량(톤/일)
- ▶ 차집관거 : 차집관거 설치비와 중계펌프장 설치비(차집관거 설치비의 산정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의 ‘m당 표준하수관거 부설비’ 기준을 참조)

※ 시설비 : 「주택단지내 상수우수발생량 원단위 산정 및 하수처리시설 소요비용연구(2001, 환경관리공단, 한국토지공사)보고서」상의 처리시설 설치비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 A²/O계열에 의한 표준시설비 적용.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99호
의결년월일	2010. 6. 18 (제161회)

제출년월일 : 2010. 6. 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통합고지 되고 있는 상수도과 하수도 요금 적용 시 소멸시효와 사용량 인정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수도요금과 형평에 맞게 정비·보완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 환경부 「하수도 표준조례」의 일부개정 시달(2009. 12. 30.)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현행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배수설비 개선공사를 강제시행 하는 것은 「하수도법」의 위임 범위를 침해하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공사시행 요건을 명확화함(제7조제1항제2호 삭제).
- 나.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의 사용량 인정 기준을 조정함(안 제11조제4항).
- 다. 가설건축물 원인자부담금의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의 보완 및 개략사업비 산정기준을 추가 규정함(안 제17조제2항, 별표 10).

마.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른 3년으로 하고, 사용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5년으로 함(안 제24조의2 신설).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호 중 “않도록”을 “아니하도록”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15입방미터(m^3)”를 “15세제곱미터(m^3)”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3개월분”을 “4개월분”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 m^3 /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처리구역외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하수처리시설 신설·증설 등이 필요할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공

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총사업비: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등 총 소요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1. 하수발생량의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 연도에 해당하는 우리 시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일 최대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 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 연도의 중간일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하수량과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상의 하수량을 비교하여 많은 양을 하수발생량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을 산정할 경우에는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는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3.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총사업비 중 시설비는 별표 10 「개략사업비산정기준」을 적용하되 처리공법 및 지중화 등 여건변경 시 사업비를 추가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소멸시효)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른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른 5년으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0]

개략사업비 산정기준(제17조제2항제3호 관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신설·증설)]

○ 소요비용 산정식 : $C = 62.55 \times Q^{0.619} + \text{차집관거(중계펌프장 설치비 포함)}$

- ▶ C : 공사비(백만원)
- ▶ Q : 시설용량(톤/일)
- ▶ 차집관거 : 차집관거 설치비와 중계펌프장 설치비(차집관거 설치비의 산정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의 ‘m당 표준하수관거 부설비’ 기준을 참조)

※ 시설비 : 「주택단지내 상수우수발생량 원단위 산정 및 하수처리시설 소요비용연구(2001, 환경관리공단, 한국토지공사)보고서」상의 처리시설 설치비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 A²/O계열에 의한 표준시설비 적용.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p> <p>3. (생략)</p> <p>② ~ ⑤ (생략)</p> <p>제9조(배수설비 유지·관리) (생략)</p> <p>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2. (생략)</p>	<p>제7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 ----- ----- -----.</p> <p>1. (현행과 같음) <삭제></p> <p>3.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9조(배수설비 유지·관리) (현행과 같음)</p> <p>1. ----- ----- ----- ----- ----- ----- ----- ----- -----.</p> <p>2.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 data-bbox="236 304 395 342"><신설></p> <p data-bbox="197 591 788 689">제17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p> <p data-bbox="236 707 788 1205">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p> <p data-bbox="236 1227 788 1438">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m³/일)를 곱하여 산정한다.</p>	<p data-bbox="836 304 1423 515">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p> <p data-bbox="799 591 1394 629">제17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p> <p data-bbox="836 651 1423 1149">① ----- ----- ----- ----- ----- ----- ----- ----- ----- -----.</p> <p data-bbox="836 1171 1423 1957">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m³/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처리구역외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하수처리시설 신설·증설 등이 필요할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총사업비: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등 총 소요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p>

현 행	개 정 안
<p>1. 하수발생량의 산정</p> <p>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 연도에 해당하는 우리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일 최대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하수량과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상의 하수량을 비교하여 많은 양을 하수발생량으로 한다.</p> <p>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을 산정할 경우에는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p> <p>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는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p> <p>③ ~ ④ (생략)</p>	<p>1. 하수발생량의 산정</p> <p>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 연도에 해당하는 우리 시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일 최대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 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 연도의 중간일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하수량과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상의 하수량을 비교하여 많은 양을 하수발생량으로 한다.</p> <p>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을 산정할 경우에는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p> <p>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는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p> <p>3.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총사업비중 시설비는 별표 10 「개발사업비산정기준」을 적용하되 처리공법 및 지중화 등 여건변경 시 사업비를 추가 적용하여 산정한다.</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 data-bbox="236 309 395 344"><신설></p>	<p data-bbox="802 309 1399 645">제24조의2(소멸시효)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 법」 제163조에 따른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 외의 징수금 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 82조에 따른 5년으로 한다.</p>